



의안번호	제128호
------	-------

-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및 운영 -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2. 9. 14.

-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및 운영 -  
**민 간 위 탁 동 의 안**

의 안 번 호	제128호
------------	-------

제출일 : 2022. 9. 14.

제출자 : 논산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위생과장

## 1. 제안이유

-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탁사무(시설)
  - ▶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 위탁기간
  - 현재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향후 : 2023. 1. 1. ~ 2025. 12. 31.
- 사업범위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과 진료
- 사업내용 :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등
- 시설 현황
  - 위 치 :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1 외 1
  - 시설규모 : 대지면적 1,643㎡, 연면적 3,424.05㎡(지하1층, 지상4층)
  - 병실 및 병상수 : 18실/117병상
  - 진료과 : 신경과, 재활의학과
- 위탁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 3. 민간위탁 추진현황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위탁기관 : 의료법인 백제병원

□ 위탁범위

-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
- 치매환자의 임상·역학적 조사 연구
- 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 기타 노인성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

□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현황

#### 가. 시 설

구 분	위 치	개 설 허가일	대지 면적	연면적	병실/ 병상수	진료과
논산시립 노인전문병원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1 외 1	2006.1.11.	1,643㎡	3,424.05㎡	18/117	신경과, 재활의학과

※ 대지면적 :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1(1,471㎡) , 내동 293-2(172㎡)

#### 나. 인 력

(2022. 7월말 기준, 단위 : 명)

직종 계	의사	약사	방사 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간호사 (조무사)	사회 복지사	의무 기록사	사무	기타 (세탁 등)	간병인 (용역)
	73	4	1	1	8	2	9(14)	2	1	3	6

#### 다. 진료현황

(매년 1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입원환자수	83	79	76	69	74	일평균
외래환자수	2,692	3,060	3,647	2,973	3,128	연인원

#### 라. 입원환자 현황

(2022. 7월말 기준, 단위 : 명)

환자수	성 별		의료보장별			질환별				
	남	여	1종	2종	보험	치매	뇌질환 후유증	관절증 사지마비	파킨슨병	기타
102	41	61	38	1	63	51	33	14	2	2

마. 당기순손익 현황(5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당기순손실	△235	△324	△708	△1,289	△962
전년대비	17	△89	△384	△581	327

※ 감가상각총당금 : 1,815백만원(21.12.31. 기준)

바. 장 비 : 제세동기 외 28종

사. 운영방법 :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

※ 근거 :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설치및운영)제3항

## 4. 민간위탁 운영 관리 평가

### ① 환자 관리 운영 평가

구 분		주요 내용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의 진료, 간호사에 의해 24시간 간호</li> <li>중풍, 치매, 노인성 만성 질환자 치료 및 전문재활치료 간병 서비스 제공</li> <li>치매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및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 안심병동(31병상) 운영</li> </ul>
환자 관리	입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환자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상예방교육 실시</li> <li>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 기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약물치료 프로그램 운영</li> </ul>
	치료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치료 및 진료</li> <li>입원진료, 재활치료, 만성치료, 치매치료 등</li> </ul>
	간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상처치 및 각종 처치, 병동 내 환자관리</li> <li>감염관리 등</li> </ul>
	퇴원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원 후 처치에 관한 사항 안내</li> <li>추후에 외래진료 할 수 있도록 안내</li> <li>퇴원 후 지켜야 할 사항을 점검</li> </ul>

## ② 인력 관리 운영 평가

구분	주요 내용
직원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을 배치</li> <li>※ 관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 3인 이상</li> <li>-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인에 대하여 1인 (2/3까지는 간호 조무사로 대체 가능)</li> <li>- 간호조무사 및 보조원 5병상 당 1명</li> <li>-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각 1인</li> <li>- 약사 1인 이상, 물리치료사 2인 이상</li> </ul> </li> </ul>
당직 의료인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직의료인 배치</li> <li>※ 의료법 시행규칙 : 입원환자 200명까지 의사 1명, 간호사 2명 배치</li> </ul>
직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종사자의 직무교육 등을 실시</li> <li>• 간병교육을 이수한 간병인을 택하여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간병인 관리 및 교육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음</li> </ul>

## ③ 시설 관리 운영 평가

구분	주요 내용
시설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실시</li> <li>•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시설 적절하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li> <li>- 방충, 방서(防鼠),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li> <li>-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li> <li>-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li> <li>-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li> <li>-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li> </ul> </li> </ul>

#### ④ 민간위탁 관리 운영 평가 종합의견

- 의료법 및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관리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논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인력 및 시설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전문 의료인의 병원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이 높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5. 민간위탁 운영 방안

#### ○ 위탁기간

- 현재 : 2020. 1. 1. ~ 2022. 12. 31.(3년)
- 향후 : 2023. 1. 1. ~ 2025. 12. 31.(3년)

#### ○ 위탁사무 :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업무) 관련

-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
- 치매환자의 임상 · 역학적 조사 연구
- 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 그 밖에 노인성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 ○ 위탁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 ○ 수탁자 자격요건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설치 및 운영) 관련

-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의원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되면 위탁협약 체결 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비교

- 운영방법 : 직영 또는 민간위탁
- 직영 및 위탁운영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직 영	위 탁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li> <li>□ 의료과업 등 업무중단 요인 해소로 인한 안정적인 병원 운영 가능</li> <li>□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 :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의료인의 병원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li> <li>□ 의료기술 및 환자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li> <li>□ 운영과 감독의 명확한 구분 (관리감독 투명성 확보)</li> </ul>
단 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한계</li> <li>□ 총액 인건비제에 따른 인력 확보의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윤추구에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 관계 대립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의 품질 저하 우려</li> </ul>

6. 실무부서 종합의견(효과, 경제성 등)

-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서의 안정적인 이고 양질의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 의료인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2. 9. 14.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보건위생과장	김 배 현
	치매안심센터 팀 장	윤 석 순
	담 당 자	임 은 혜 (746-6922)

## 참고

### 1 道內 타·시군 비교

병원명	위수탁현황					사용료 부과 여부
	담당부서	기간	수탁기관	최초 위탁일	위탁 만료일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동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5년	영서의료재단	'05.11.22.	'25.12.29.	X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보령시보건소 보건행정팀	5년	성보의료재단	'09.11.26.	'23.12.31.	X
서천군립 노인전문병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5년	대전교구	'08.08..28.	'26.08.31.	X
도립서산 노인전문병원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5년	서산의료원	'08.05.01.	'23.04.30.	X
도립홍성 노인전문병원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5년	홍성의료원	'03.05.01.	'23.04.30.	X

※ 도내 공립요양병원 5개소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임

### 2 관계법령 [발췌]

#### □ 「치매관리법」

#####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운영 및 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충청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업무)**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
3. 치매환자의 임상·역학적 조사 연구
4. 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노인성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2.30.)

1.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의원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되면 위탁협약체결 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즉시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